

## 【9】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8. 06. .

제출자 : 양주시장

### □ 제안이유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과 같이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 12. 31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부과하고, 2008. 1. 10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 12.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2009. 12.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코자 함.

(안 제18조)

양주시조례 제 호

##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p>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p>제18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 ----- ----- -----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2. (생략)	2. (현행과 같음)